

(參 照)

성남 시 의 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 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변 호	989
------------	-----

2000. 9. 22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(2000. 6. 16)의 개정 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가 일부 조정됨으로써
- 해당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중 “성남시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”, “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”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임.

3. 검토의견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회 직무의 공백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